

# 의과대학 질관리(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, CQI)위원회 운영규칙

제정 2022. 5. 12.

**제 1 조(목적)**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「질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」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 2 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한다.

1. 의과대학 교육 과정의 질 향상에 관한 계획 수립, 추진 및 지원
2. 의과대학 교육 과정의 지속적인 개선과 평가
3.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 관리
4. 의학교육 지속발전 방안 수립 및 운영
5. 기타 의학교육 질 개선에 관한 주요 사항

**제 3 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교내위원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.

**제 4 조(위촉 및 임기)** ① 위원장과 위원은 의과대학장의 제청으로 의료원장이 위촉하며, 의학교육실장, 학생 부학장, 자체평가위원장, 입학관리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

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, 위원장 및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에는 위원 중 간사 1인을 둔다.

**제 5 조(위원장 등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회의를 소집하고, 회무를 통할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대행자를 지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과대학장이 지명한다.

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무를 보조한다.

**제 6 조(회의소집 및 심의)**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연간 최소 4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

**제 7 조(회의록 및 보고)**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과대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 8 조(보칙)**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과대학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2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.